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국회 추천 의무화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51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국회 추천 의무화 등	3
2.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승인 절차 신설	8
※ 참고자료	12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및 구성	12

I. 제안경위

2024년 9월 6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되어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국회 추천 의무화 등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 ④ (생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 ----- ----- ----- ----- ----- ----- ----- <u>.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u>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조¹⁾는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

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²⁾

그런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국회의 추천 권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가적 장기 목표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법·제도 및 재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민의 대표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추천을 거쳐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책 심의 및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2) [참고자료 1] 2022.10. 26.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 당연직위원 21명, 위촉직위원 32명(4개 분과)으로 구성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는 현행법 제15조³⁾에도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⁴⁾, 지속가능발전위원회⁵⁾, 청년정책조정위원회⁶⁾ 등 현재 운영 중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국회 추천 절차 없이 위촉권자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3조(조직)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6)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참고로, 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국회 또는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① 방송통신위원회⁷⁾, 개인정보보호위원회⁸⁾, 국민권익위원회⁹⁾ 등과 같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 및 ② 제주4·3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¹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¹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¹²⁾ 등 참여한 분쟁조정을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8)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의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0)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이 있음.

[위원회 특성별 국회 추천 여부 구분]

- 정부위원회 구성시 국회 추천을 받는 경우
 - 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같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
 -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 첨예한 분쟁조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별 국민에게 직접적인 처분의 효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위원회
 -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는 위원회는 별도의 국회 추천 절차 없이 위촉권자가 전문성에 기반하여 구성*
- * (예시)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산학협력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년조정위원회 등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승인 절차 신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u>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u>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 ----- <u>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u> ----- <u>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³⁾에서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 11. (생략)

③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계획을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¹⁴⁾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전적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중·장기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회로 대표되는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환경부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는 현행법¹⁵⁾에

14) 정부는 2023년 4월 12일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므로 2028년에는 2028년부터 2047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따르면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다양한 사회 계층이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가비전에 대한 국가탄소중립녹색 성장전략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관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국회 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⁶⁾.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참고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전기사업법」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경우에도 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확정된 이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3

※ 참고자료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및 구성

※자료: 국무조정실

-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시행)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 출범)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5.4 시행)에 근거

- (소속 및 기능)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기본법 제16조)

* 핵심 국정과제를 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수 부처 관련 기능을 수행하여 어느 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

<<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위촉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기본법 제15조 제8항)

- (분과위 등 설치)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기본법 제19조 제1항)

□ 1기 위원 구성(55명)

○ 위원장(2명) + 당연직 위원(21명) + 위촉직 위원(32명)

(위촉직 위원은 가나다 순)

구 분		이 름	소 속
1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2		김상협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발전 자문역(부총장)
3	당 연 직 (21)		기획재정부장관
4			교육부장관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6			외교부장관
7			통일부장관
8			행정안전부장관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2			보건복지부장관
13			환경부장관
14			고용노동부장관
15			여성가족부장관
16			국토교통부장관
17			해양수산부장관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0			국무조정실장
21			금융위원회위원장
22			산림청장
23			기상청장
24	위 촉 직	신영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융합학부 교수
25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26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27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8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9		최우정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30		황영규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장
31		황정하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온실가스 감축 분과 (8)

구 분			이 름	소 속
32		에너지·산업 전 환 분과 (9)	강석원	영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33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34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이사
35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36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37			박철완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38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39			조 신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40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41		공정전환· 기 후적응 분과 (7)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
42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43			신현석	부산대학교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장
44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45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46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47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48		녹색성장· 국제협력 분과 (8)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49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50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
51			이기택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52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ESG연구센터장
53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54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55			최한길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2기 한화진 민간위원장 위촉('24.11.4)